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1월 15일, 김윤의원 등 2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1월 16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1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회의(2026. 4. 2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4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1차 전체회의(2026. 4. 29.)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윤의원)

현행법은 국가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진료·재활·연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에 관한 의료보장은 취약하고 심장질환 전문인력 및 인프라

도 부족한 상황임. 또한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경우 전문 치료기관의 지역별 격차로 인해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음.

이에 심장질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증·난치성 심장질환’의 개념을 신설하여 국가 책임과 지원 근거를 분명히 했음. 또한, 국가가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환자의 의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심장질환 전문 중환자실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의료기관 및 대학의 전문 의료인력 양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음. 아울러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의 개념과 소아심장거점병원 지정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심장질환 환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신은호)

개정안은 심장질환을 세분화하여 규정하는 등 심혈관질환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특정 질환을 세분화하여 추가하는 것은 다른 질환의 규정방식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역할 정비는 업무 수행 가능성 및 인력·소요비용의 검토 등을 거쳐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임. 부칙의 경우, 개정안의 시행일 조정,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신설 등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동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